

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-180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3년 11월 21일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

위원장 이준구

1. 수정이유

별표 1-1의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의 업무용과 영업용의 구분에 있어 업무용 구분내용의 “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”가 영업용 구분내용의 “금융기관”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명확한 구분과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고, 협동조합법에 의한 “신협”을 업무용 구분내용에 추가하고 영업용 구분내용의 “금융기관”을 “금융기관(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·신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제외)”로 수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[별표 1-1] 업무용 3호의 구분내용중 “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”를 “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·신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”로 신협을 추가함.
- 나. [별표 1-1] 영업용 3호의 구분내용중 “금융기관”을 “금융기관(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·신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제외)”로 수정함.

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[별표 1-1] 업무용 3호의 구분내용중 “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”를 “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·신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”로 한다.

[별표 1-1] 영업용 3호의 구분내용중 “금융기관”을 “금융기관(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·신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제외)”로 한다.

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수정안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		수 정 안	
업종	구 분 내 용	업종	구 분 내 용	업종	구 분 내 용
가정용	(생략)	가정용	(생략)	가정용	(개정안과 같음)
업부용	(생략)	업부용	1. (생략) 2. (생략) 3. 관공서, 병영, 학교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% 이상 출자·출연한 법인 및 단체(생산·제조용수 제외), 종교단체, 방송국, 신문사, 정당, <u>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·신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</u>	업부용	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3. ---- <u>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·신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</u>
영업용	(생략)	영업용	1. (생략) 2. (생략) 3. <u>규모기관, 체육시설업(체육도장업, 탁구장업 제외), 단기 급수할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(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 건물: 입주 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 단계요금 적용)</u> 4 ~ 6 (생략)	영업용	1. (개정안과 같음) 2. (개정안과 같음) 3. <u>규모기관(새마을금고·농협·수협·축협·신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)</u> ---- 4 ~ 6 (개정안과 같음)
욕탕용	1종 (생략)	대중목욕탕용	(생략)	대중목욕탕용	(개정안과 같음)
	2종 (생략)				
산업용	(생략)				